#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4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임오경·이기헌·전재수

김현정 • 박 정 • 양문석

민형배 · 조계원 · 이인영

박홍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868명으로 방송(10.669명), 영화/애니(13.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 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 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공연콘텐츠가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

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6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 (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따른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 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 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 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 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 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2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 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u>제25조의6</u>, 제26조, 제2 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 ·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 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 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⑥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63조제1항,제63조제1항,제63조의2제1항,제63조의1항,제63조의2제1항,제64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제85조의6제1항·제2항,제99조의9제2항,제99조의11제1항,제104조의24제1항,제121조의8,제121조의9

제25조의6, 제
25조의8
2021-10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 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 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 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 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 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 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 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하다.

## ⑤ ~ ⑪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저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제25조의6, 제25조의8
⑤ ~ ① (현행과 같음)
세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 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 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 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 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 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 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 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한다.

## ② ~ ④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저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u>제</u>
25조의6, 제25조의8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 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 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 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 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

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 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

1 0 (청체코 가 O)
 1.·2. (현행과 같음)
3
3 
3
3 
3 
3 
3 
3
3

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10, 제104조의310, 제104조의31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4. (현행과 같음)
②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 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 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 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u>제25조의6</u>,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③ • ④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5조</u>
의6, 제25조의8
4. (현행과 같음)
3 · ④ (현행과 같음)
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 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 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 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 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 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 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 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u>제25조의6부터 제25조</u>
의8까지

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 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 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②
<u>A</u> ]
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u>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u>
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u>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u>
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괴	· 제1
항에	따라 여	기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	복되는	경우어	는 제	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 금액	을 먼
저 공	제하고	그이	월된 🏻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	는 경우	우에는
먼저	발생힌	: 것부	터 차려	ᅨ대로
공제형	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